

상품 제조 위수탁 계약서

갑 :

을 : 주식회사 코리아코스팩

상품 제조 위·수탁 계약서

제품의 제조 관련, 제조 위탁자인 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제조 수탁자인 주식회사 코리아코스팩(이하 “을”이라 한다)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품의 생산, 제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갑”은 “갑”이 지정한 규격, 사양 등에 의해 계약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제조 또는 가공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여 “갑”에게 납품하여 “갑”으로 하여금 “갑”의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계약에 규정한 사항은 “갑”과 “을” 양사의 거래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되며, 개개의 공급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다만, 향후 체결되는 개별계약이 있을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각 개별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갑”이 발주 연월일, 품명, 규격, 사양, 수량, 납기, 납품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을”에게 주문서를 제시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4 조 【거래상품】

1. 제품의 상세 사양, 도면, 품질 기준 등은 각 거래 시 개별계약 또는 주문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제품의 사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하며, 이로 인해 비용 또는 납기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 5조 【거래 조건 및 결제 방법】

1. “을”은 “갑”이 개별계약에서 주문한 제품을 “갑”에게 납품한다.
2. “갑”과 “을”은 제품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3. “갑”은 “을”에게 주문 시 제품 대금의 50%를 지급한다.
4. “갑”은 나머지 잔금 50%을 제품의 인도 후 제7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즉시, 또는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6조 【발주, 납품 처 및 납기】

1. 발주는 납기 60_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개별계약에서 정한 납품 장소에 납기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납기 지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납기 지체의 경우 “을”은 1일 당 주문 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을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단 지체보상금의 총액은 지체된 금액의 3%

를 상한으로 하고, 천재지변, 전쟁, 파업 등 “갑”과 “을”의 통제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의무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가 지속되는 시간동안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이행 의무가 면제된다.

제 7조 【납품 및 검수】

1. “을”은 “갑”의 주문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개별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이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납품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1항에 따른 제품 인도 시 “을”또는 “을”의 운송인은 지참한 송장을 “갑”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갑”이 검수, 확인하는 수량을 최종 공급 수량으로 한다.
3. “갑”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을”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갑”이 제품을 인수할 때 “을”이 “갑”에게 제시하는 거래명세표에 수령 확인함으로써 물품수령증의 교부에 갈음한다.
4. 제품의 검사항목, 규격치 및 시험방법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제품이 불합격할 경우 “을”은 신속히 보수 또는 교환하여 재납품한다.

제 8조 【원, 부재료의 조달】

1. “갑”이 주문한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필요한 원, 부재료는 “갑”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이 조달하기로 합의한 항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이 직접 조달하는 경우 “갑”이 표준품으로 설정한 제품의 사양을 기준으로 품질검사를 하여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3. 제품의 생산 또는 가공 시 “갑”이 공급하는 특정 원, 부재료에 대하여 “을”은 “갑”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고, 사용 후 잔량은 “갑”에게 반납하며,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제 9조 【품질관리】

생산할 제품의 품질은 “갑”이 “을”에게 제시한 견본품 또는 기준에 준한다.

제10조 【품질보증 등】

1. “을”이 생산하여 “갑”에게 납품한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각 개별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을”은 제조상 결함에 한하여 책임을 지며, 그 범위는 하자가 있는 제품의 무상 수리 또는 교환으로 한정한다.
3. “갑”의 지시에 따른 원재료 사용, 사양 변경, 또는 “갑”의 보관·유통상 과실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을”이 면책된다.
4. 제품의 장기적인 보관이나 유통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화장품 시장 관행의 품질관리 기준 등 보편적인 관행 및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5. 물품의 제조 및 인도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을”이 그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의 범위는 “갑”이 “갑”의 비용으로 “을”의 공장에 반품하여 “을”은 그 하자를 치유한 후 이를 다시 “갑”에게 재공급하는 것으로 하거나, “갑”으로부터 입금 받은 물품대금 및 그 대금의 3%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그 책임의 한도로 한다.

제11조 【소비자 클레임】

1. 제품이 소비자 등 제3자로부터 클레임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갑”이 교섭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그 해결과 차후 유사한 클레임의 예방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2. 제기된 소비자 클레임의 원인이 “을”의 제조상 명백한 과실로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을”은 신속히 제10조 3항에 따라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하며, “을”이 “갑”에게 제품을 인도한 후 유통과정상 문제로 인한 클레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1. “갑”이 제공한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을”은 이를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 수행을 위해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술자료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및 제공할 수 없다.
3.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권리침해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유효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양자 간에 서면에 의한 변경, 종료를 통보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본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유효하게 존속되는 개별계약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은 당해 개별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기밀유지】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해 알게 된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비밀 등은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계약해제, 해지 등】

1.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될 경우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가. 감독관청에 의해 영업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 나.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아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 또는 파산신청이 제기된 경우 등 도산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 라. 해산의 결의를 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된 경우
2.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위반의 사정을 최고하고 30일이 경과하여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갑” 또는 “을”은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 종료 후의 조치】

1. "갑" 또는 "을"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상호간에 대여 또는 공여된 도면, 규격서, 사양서, 도면화된 정보 및 제조기술, KNOW-HOW 등을 신속히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을"은 위 8조의 경우 무상으로 지급된 원, 부자재를 신속히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갑"은 위 8조의 경우 "을"의 소유인 완제품 및 반제품 등을 제3자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4. "갑" 또는 "을"은 위 8조 또는 11조 해당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해지로 인하여 계약 내용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 만료 후에도 위 11조, 14조에 정한 의무는 계속 존속한다.

제17조 【협의해결】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하거나,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성의를 가지고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합의 관할】

본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상호간의 협의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그 분쟁에 관한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을" 쌍방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갑"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을"

: 상 호 : 주식회사 코리아코스팩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25번길 5-19
 대표자 : 대표이사 임 성 준 (인)